

문서번호	의회13130-161
보존기간	영구
보고일자	'99. 7. 8

제	전문위원	간사	위원장
이종만	최동수		장수현
협조			

1999. 7. 14

제4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

## 제천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

### 심사 보고서

산업도시위원회

# 제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1 제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9. 7. 3

다. 상정일자 : 1999. 7. 8 (제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교통과장 최영배)

#### 가. 제안이유

주차장 관련법령중 노외주차장의 설치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일반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관련법이 신고에서 통보로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,
-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규정 등을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조항으로 개정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개정안은 적법절차에 의거 제출되었으며,
-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노외주차장 설치시 사전에 신고토록 한 것을 설치 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,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에게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시민에게는 다소의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실제 이용자에게는 편익을 제공 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사료됨.

단,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행에 차오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#### 가. 질의요지

- 1)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자율화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영 주차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행정적 지도대책과, 민영이든 공영 주차장이든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개정안에 대한 홍보대책은?

(김병창 위원)

- 2) 건축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화하는 것인데, 시내중앙 변화가 지역의 건물 부설주차장에도 요금을 받는다면 주차난 가중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 (이종호 위원)

- 3) 기존 부설주차장으로 조성된 곳만 해당되는가? 아니면 공한지등 본인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도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인가? (권길남 위원)

#### 나. 답변요지 (교통과장 최영배)

- 1) 민영주차장의 요금 자율화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풀어나가겠다는 취지이며, 주차요금을 많이 받음으로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, 이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문제점을 해소하고, 개정안에 대하여는 언론과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겠음.
- 2)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목적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물 입주자 또는 거주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면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.
- 3) 개인이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금번 조례개정과는 상관 없이 설치와 요금 장수등 모든 것이 자율화 되어 있음.

### 5. 소수의견

“ 없음 ”

### 6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### 7. 심사보고서 불임서류

제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.